

#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운영규칙

제 정 2023. 12. 29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전북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 직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인구·청년지원연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①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 제규정 및 제규칙에 의한다.

②센터직원의 채용, 인사관리, 복무 및 후생, 평가, 연봉 및 각종 제수당 등의 지급기준, 재무회계 등은 연구원 정관, 제 규정 및 규칙, 각종 지침에 의한다.

**제3조(기능 및 사업)** 센터는 인구감소 및 청년유출 대응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인구, 경제·사회·문화적 여건, 지역별 특성 도출, 실태조사 등 인구정책 기초연구
2. 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·지원 등 소멸대응 정책 기획
3. 청년 삶의 질 관련 생활여건 분석, 실태조사 등 청년정책 기초연구
4. 중앙부처·지자체·해외 청년 시책 동향 파악 등 청년정책 기획
5. 그 밖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

**제4조(운영원칙)** 센터는 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다.

**제5조(운영재원)** 센터의 운영재원은 도비 등(출연금 등)으로 교부받아 연구원 일반회계로 운영하되, 센터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한다.

**제6조(조직 및 정원)** ①센터 정원은 센터장, 연구직 4명, 관리직 1명으로 하고 원장은 연구원 책임연구위원급 이상 중에서 센터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②센터장은 센터업무를 총괄하고 사무를 분장하고 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센터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.

③원장은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센터 정원 외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연구원 소속 직원 및 센터 직원은 상호 공동연구를 수행 할 수 있다.

**제7조(자문위원회)** ①센터는 사업운영의 실효적 지원을 위해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.

②센터장은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이 된다.

③자문위원회는 사업의 분야별로 내·외부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8조(사업계획 등)** ①센터장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## **부 칙** <2023.12.29>

(시행일)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